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1-148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로자대표 선거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30.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1. 공 고 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로자대표 선거

2. 선출방식
   1)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7명이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 대표위원 1명 호선(互选)
   2) 선출된 근로자 대표위원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여부 동의 투표
   3) 과반수 동의 시, 관계 노동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대표의 역할 겸임

3. 선거개요
   1) 선거기간 : 2021. 3. 31.(수) ~ 2021. 4. 7.(수)
   2) 개표일 : 2021. 4. 8.(목)
      ※ 상기 일정은 동의서 수령(도착)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개표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4) 개표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명
      (참관인 : 운영지원과 업무담당자 1명)

4. 근로자대표 후보자

소속	성명	직종	성별	연령	입사일
본부 방역감시과	안아진	콜센터상담원	여	36세	2018. 1. 1.

5. 투표방법
   1) '[붙임] 동의서'에 기재된 근로자 대표 후보자 및 근로자 대표 주요권한 확인 후, 투표자의 인적사항·동의여부·의견사항 등 기재
      ※ 본 동의서는 선출된 근로자 대표위원에게 근로자 대표 권한을 부여하는 신임투표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명투표 실시
   2) 각 부서·사무소에서는 본부 운영지원과로 동의서 원본 송부

[붙임]

동 의 서

1. 의견조회 대상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근로자
2. 동의여부(동의 또는 반대 란에 'O' 표시)

– 동의사항 : 본인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이 호선한 안아진 근로자 대표위원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령에서 정한 '근로자대표' 권한을 겸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로자 대표 후보자>

1. 성명 : 안아진　　2. 소속 : 본부 방역감시과　　3. 직종 : 콜센터상담원

소속	직종/직위	성명	서명	서명일자	동의	반대	의견사항

<근로자대표 주요 권한>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협의'(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2.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근로기준법 제52조)
4. 보상휴가제 '합의'(근로기준법 제57조)
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합의'(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
6. 유급휴가의 대체 '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
7. 임산부 등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협의'(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

*** 상기 항목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합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귀하